

제 4 장

제 4.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 · 주소 · 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

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

3. 발급기관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합치될 것

다. 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기재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복수 품목의 수출이 허용될 것

제 4.4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가.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나.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

다.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2. 발급기관은 제2부분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분을 수

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3부분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수입자는 제3부분을 보유한다. 수출자는 제4부분을 보유한다.

3.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변경은 해당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서명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승인 및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긋고 지워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의 도난·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원본증명서 대신)“진정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 및 3부의 부분에 대한 진정등본을 발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제4부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제 4.5 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그 만료일 이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상품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 전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단일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또는

나. 복수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한 번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 4.6 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1.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제 4.7 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 4.8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면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마. 수입자는 신고의 기초가 된 원산지증명서가 옳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제1항라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4.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수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5일 이상이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입자가 제1항마호에 따라 정정된 원산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4.16조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제 4.10 조 기록유지요건

1. 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4.11 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문제의 상

품이나 그 상품의 특정 부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¹⁾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무작위로 사후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하고 그 사유와 원산지증명서상에 주어진 특정사항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신속히 요청에 응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조치를 수반하여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검증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12 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1) 대한민국의 경우, 인도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에 언급된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당국을 지칭한다.

1.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에 따른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및/또는
-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2.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서면 요구서 또는 질문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정보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임을 적시한다.

3.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작성된 질의서 또는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하고 검증 대상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완료 전 고려될 만한 서면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5. 제1항다호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

-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음에
계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2)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발급기관
 - 3)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관세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 대상 상품의 수입자

나.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명칭
-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 3) 검증방문 예정일
- 4)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 예정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획득한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검증방문 대상이 되었을,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할 의사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동안 수행된다.

6. 제1항다호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방문과정에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할 수 있다.

7.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 발급기관에 그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된다.

8.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전달한다.

9. 검증방문이 수행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방문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보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발급기관에 전달된다.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4.11조제1항다호가 적용된다.

10.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방문에 앞서 상품의 수입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는 근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13 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1.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재료의 검증은 제4.12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2.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관세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

- 가. 기록에 대한 접근거부
- 나. 검증 질문서에 대한 미회신, 또는
- 다. 제4.12조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라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방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

3. 당사국은 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마호에 따른 검증방문의 연기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지는 아니한다.

4.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의 규정상의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 4.14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제4.1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2. 제1항마호의 목적상, “행위유형”이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적어도 2회 행한 경우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서면 결정서를 제4.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송부한 것을 말한다.

제 4.15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

2.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정보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의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과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모든 행정적·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미리 통보받는다.

제 4.16 조

별 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원산지증명서와 연관된 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관련인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한다.

제 4.17 조

검 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시스템과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4.18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당사국 각자의 법·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이내에 통일규칙을 수정 또는 추가한다.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청 ·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나.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2. 위임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함으로써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수출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러한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취소한다. 이 목적상 수출 당사국은 권한 위임의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견해도 고려한다.

3. 수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취소 · 교체 또는 추가 사실을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본(제2부본/제3부본/제4부본)

1. 수출자 (이름, 주소, 국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참조번호: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2. 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선택)		발행국 _____ (국가) _____		
3. 수입자(이름, 주소, 국가)(선택)		5. 담당자란		
4. 운송 수단 및 경로(선택) 출항일: 선명/편명 등: 적출항:		6. 비고		
7. HS 번호(6 단위)	8. 수량을 포함한 상품명세	9. 총중량 및 가격(FOB)	10. 원산지 기준	11. 송장번호 및 일자
12. 수출자 신고 아래 서명자는,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국가)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3.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장소, 날짜, 서명 및 발급기관의 관인		
14.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장(이름, 주소, 국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가. 수입당사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다.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 3.4조제 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특정공정 - 기타	"CC / CTH / CTS defense"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예: "RVC 35%" "CC / CTH / CTS defense" 또는 RVC X% "CC / CTH / CTS defense" + "RVC X%" "SP" "Others"
(라)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제 5 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제 5.1 조

목적 및 원칙

이 협정상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인도 간 양자적으로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데 협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모두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상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데 합의한다.

- 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에 대한 수요와 사회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원활화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절차는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간소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나. 통관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게 한다.
- 다. 당사국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개정을 채택하기 전 그 당사국 무역업계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한다.
- 라. 절차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법규준수 노력에 집중하기 위한 위험평가원칙에 기초한다.
- 마.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호협력·기술지원 및 우수 관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제 5.2 조

상품의 반출

-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

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의 완료시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이전에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다. 금지·통제 또는 규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자가 수입된 상품을 보세창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수입지점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절차, 그리고

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입과 연관된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납부에 대하여 담보·예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긴급을 요하는 상품이 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동안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쿼터 대상 상품 또는 건강 관련 또는 공공안전 요건 대상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하여 또는 특정 상황 하에서, 관세당국이 상품 반출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시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자국의 각 기관의 요건이, 관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관계기관을 대신하여 관세당국에 의하여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되도록 보장

하는데 노력한다. 이 목적의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서류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서류 제출 요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6. 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협의 수단을 마련한다.

제 5.3 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가. 전자시스템이 세관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의 개발을 포함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5.4 조 위험 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분석 및 선별을 위한 전자적인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5.5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들 절차는 가능한 한도에서,

-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화물즉시반출지침을 이용한다.
- 나. 도착 즉시 특송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특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이전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그리고
- 다.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서류요건을 규정한다.

제 5.6 조 투 명 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 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5.7 조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및 사법적 재심 또는 상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이해당사인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재심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의 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제4.15조(비밀유지)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상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제 5.8 조

사전심사

1.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 내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전, 다음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하도록 노력한다.

- 가. 상품의 품목분류
- 나. 상품의 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채택된 원칙
- 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 또는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심사 신청 처리에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자국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사전심사를, 예컨대 인터넷에 공표한다.

4.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양자간 대화에서 제1항에 열거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 각각의 법과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제 5.9 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 우수 관행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선진 통관절차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인 이동의 원활화에 대한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에 따라 통관기법·자동화 및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수출 및 일시 경유에 관한 통관 관련 사안에 있어서,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 및 데이터 요소의 국제표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양 당사국의 관세연구소 및 과학부서간 협력을 강화하

는 것

- 다. 양 당사국간 세관직원을 교환하는 것
- 라.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
- 마. 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 바.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양 당사국 모두가 일관적으로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 표준 및 체제를 개발하는 것
- 사.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으로, 상품의 품목분류·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조력하는 것, 그리고
- 아.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

4.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품목분류에 관한 불일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5.10 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는 관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 가. 제3장(원산지 규정)·제4장(원산지 절차)·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적 해석·적용 및 운영
 - 나. 원산지 결정에 관한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

다. 원산지 규정의 검토

라.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의 통일적 해석·적용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검증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의 개발,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양 당사국 또는 공동 위원회가 관세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관세 관련 사안을 고려

2. 관세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매년 1회 대한민국과 인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

3. 관세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4. 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해결책·권고사항 또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양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11 조 관세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 및 그 밖의 관련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관세접촉선을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안은 제5.10조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